

All LIVE HANGUK Party



한국국민당

강령/정강/정책

목 차

한국국민당 강령/정강 정책

< 강령 / 정강 요체 >

[전 문]

첫째, 단군주의 국가

둘째, 공평하고 소통하는 사회

셋째, 정의로운 대한민국

넷째, 통일 대한민국

< 정 책 요 체 >

국민통합 · 평화통일체제 개념정립당

한국국민당은

이념 · 진영 · 지역을 초월한 통합 정당입니다.

한국국민당은 인물이 아닌 정책 정당입니다.

한국국민당은

경쟁이 아닌 공생정당입니다.

한국국민당은

섭리를 아는 개혁 정당입니다.

통합과 통일을 위한 전 세계 최초의 정당!

한국국민당에 의한

“국민통합 · 평화통일체제 개념정립”은

세계평화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국민당이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시대를 열겠습니다!

<한국국민당이 사랑하는 국민께 고하는 상서>

1. 21세기는 문화의 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절대가치의 부재로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단군주의(천부경)의 현대적 재창조인 <평화철학>을 기반으로 한 새 가치관

(정도正道 -중中 화和 론論 · 양兩 미未 론)

을 통해, “이분법적 사고(좌-우/보-진)”는 “중화론(中和論)”으로, “양비론(중간-중파)”은 “양미론(兩未論)”으로 혁파하고, 새 시대를 위한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워 협동·공생·공익(탈이념·탈진영·탈지역)의 “신문화·신문명시대”를 열겠습니다. 가. 민족의 원뿌리 역사를 복원하여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단군주의(존재+생성) 시대를 열겠습니다. 나. 존엄한 인간의 영혼이 책임에 의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협동주의(자유+평등)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 국유화와 사유화를 조화롭게 결합한 생산 수단으로

새로운 공생주의(자본+사회)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 배급(계획·통제)과 시장의 비율을 조화롭게 결합한 자원 분배로

새로운 복합경제(시장+정부=자본주의4.0)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 공공성과 민주성을 조화롭게 결합한 지도자 선출로

새로운 공민주의(민주+권위) 시대를 열겠습니다.

유사 이래 지금 우리의 한반도와 세계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위기는 기회이지만, 위기를 기

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불러들인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파악하여 그 해법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위기로부터 탈출은커녕 오히려 그 위기로 인하여 공멸하게 되는 법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새(新) 가치관의 부재에 의한 “소득의 불평등”과 “북핵에 의한 공포”입니다. 국민통합과 남북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국민통합과 북핵문제의 해법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반드시 동시에 창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국민당은 역사의 준엄한 요청인 “통합”과 “통일”이라는 두 의제의 성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새 가치관에 의한 정강·정책(5대 이념·5대 노선·5대 정책목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기존 정치는 이념과 정당, 그리고 지역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책이 아닌 인물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한국국민당’은 이러한 패거리 정치인들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 국민의 주권을 찾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엄한 우리 국민의 주권을 맡길 국회의원(지방의원) 위정자들의 기본적인 자격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나. 우리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세금 납부 사실이 있는 자. 다. 대한민국 법에 의해 5년 이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라. 대한민국 공직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하지 아니한 자.

3. 단군 이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는 세계체제의 축소판입니다. 역사의 신神은 한반도를 세계 열방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 즉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로 세계평화의 본보기(role-model)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세기 동안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존재론적 시간표(역사 섭리의 기간 공식인 40년 주기설)에 의하면, 1987년부터 2026년까지가 ‘통일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2024년에는 구체적

인 통일의 청사진(평화통일체제 개념정립)을 준비하여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의식혁명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류는 시대정신에 맞는 새 역사를 재창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대대적 군사 도발로 인해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홍익공생당'은 대재앙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기 위해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5대 이념과 5대 노선, 그리고 5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5대 이념>

평화통일체제 개념정립
(평화철학+박정희 경제학)

1. 단군주의
2. 협동주의
3. 공생주의
4. 복합경제
5. 공민주의

<5대 노선>

1. 새 가치관 정립(정도 正道 -중화中和론·양兩미未 未론)
2. 창조적 개혁(종교·정치·경제-System-지성국가)
3. 개헌과 분권(삼원집정부제 : 1.정신적 지도자 2.대통령 3.책임총리)
4. 자유공동체주의(협동주의)
5. 공존·공생·대동주의(신문화·문명 창설)

<5대 정책목표>

1. 경제부 & 새정신부 신설
2. 기본자산제·농어촌기본소득제(100만원=50만원+공공혜택) 실시
3. 토지·주택·금융·교육·의료·법률·대중교통·생산·유통의 50% 공영화
4. 제4차 산업·AI·ICT·양자의학·항노화(약초산업) 50% 공영화
5.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향

1. 영토주권 회복

- 1) 헌법 제3조의 개정
- 2) 단군사관에 의한 역사 연구소의 설립

2. 정치

- 1) 단군의 자손으로 충(忠), 효, 예의 문화 확립
- 2) 지역구도 청산
- 3) 정치 세력의 다양성
- 4) 정책정당과 상생정치
- 5) 권력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 6) 지구당 제도의 부활과 투명성 강화
- 7) 국민소환제(국회의원)
- 8) 선거법 개정을 통한 후보자 거부권 행사의 법적 제도화
- 9) 먹튀방지 정치자금법 개정
- 10) 선거보존비용 제도의 개선
- 11) 보궐선거비용의 자부담 추진
- 12) 국회선진화법 개정
- 13) 선출직 당선자의 겸업제한
- 14) 국회의원 공무 겸직금지
- 15) 국회의원 특권 폐지**
- 16) 정치권력 견제와 소선거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채택
- 17) 입법부의 부조화 및 부나방 법안 평가제도 도입
- 18) 전시행정 및 선심성 공약 방지를 위한 국민 공약검증센터 설립
- 1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
- 20) 사법부의 민주화·선진화 실현과 경찰조직의 확대 및 전문화
- 21) 경력 법관제도 도입
- 22) 특검 및 특별법 운영에 따른 특별재판소 설치
- 23) 전문법원 확대
- 24) 감사원의 국회소속 이관
- 25) 행정수반의 고유 업무 정진을 위한 제도개선
- 26) 행정고시 제도의 폐지
- 27) 행정부의 구조 및 제도 개혁
- 28) 행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혁
- 29) 행정부의 중복사업 개선과 체질 개선
- 30) 행정부 공무원 자체 생산법령 철폐 및 법안 유권해석의 의회 이관
- 31) 필요성을 입증 못하는 규제의 철폐
- 32) 국가 공무원법 개정
- 33)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 34) 공직자 불법 범죄행위 조사시 재산동결 특별법 제정
- 35) 국민 특별감사관 제도의 신설·독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 36) 정부차원의 사회비리 전담 위원회 설치
- 37) 국가기관 비리신고 특별감찰위원회의 법적 제도화
- 38) 민간 사무관 제도 확대
- 39) 정부의 예산 및 교부금의 전용금지
- 40) 부정수령 보조금의 징벌적 규정 강화 및 확대
- 41) 국가 연·기금 전용에 따른 금리 법안 제정
- 42) 지방자치 단체 대규모 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
- 43) 전자서명제도의 국가 책임제 도입에 따른 공인인증제도 개선
- 44) 부조화 사회규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45) 국가의 민간재산 압류 사후조치 제도마련

- 46) 주민증 제도와 연동한 사회기여자의 우선적 배려제도
- 47) 계층 고착화를 탈피하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 확대
- 48) 퇴직공무원 및 공기업 출신들의 사외이사 중복 방지 및 일반인 고문 채용 의무제

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1)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대학 균형 육성
- 3) 지역축제의 제도 개선
- 4) **전라도, 경상도 폐지**
- 5) 중앙집권적 중앙당제도의 폐지와 관리위원회 신설-8

4. 외교 · 안보

- 1) 한반도의 비핵화
- 2) 영토주권 확립과 방위역량 실현
- 3)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4) 균형외교
- 5) 자유무역협정의 제도적 장치
- 6) 재외동포의 권리 신장
- 7) 민주주의, 반테러 실현
- 8) 국방개혁
- 9) 군영생활의 만족도 실현
- 10) 여성 군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복지를 위한 24시간 군 탁아소 설치
- 11) 병역 면제자의 국방세 의무부과
- 12) 영 · 관급 고급장교의 효과적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13) 군 필자 가산점 제도 부활

5. 통일과 동북아 공영

- 1) 북방경제
- 2) 민족 동질성 회복
- 3) 이산가족특별경제구역
- 4)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 5) 국군포로 자녀의 자유 귀순민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실시를 위한 특례법 제정
- 6) 독립 애국인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과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 사업실시를 위한 특례법제정

6. 통일사회를 대비한 자유귀순민 특별법 제정

- 1) 자유 귀순민 차별 금지법 제정 -
- 2) 자유 귀순민들의 행정능력 양성을 위한 특례법 제정과 행정 전문 대학교 설립
- 3) 자유 귀순민 전용 농공단지 설립

7. 경제민주화

- 1) 참여경제를 통한 성장경제 구현
- 2) 국가경제브랜드 통합인증센터 설립
- 3) 금융질서의 개편
- 3) 방만한 공기업의 개혁
- 5) 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6)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 7) 조세 민주주의 실현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조세 불균형 개선
- 8) 기업과 사회의 공평한 조세 원칙 실현
- 9)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의 징세
- 10) 기업 한계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 및 근로자 의무 배당제 실시
- 11) 기업 적립 금융공사 설립
- 12) 환경 부담금(분담금) 제도의 개정
- 13) 석유화학 제품의 유가 연동제 실시
- 14)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15) 부가가치세 예납제도의 개선
- 16)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 17) 동일 장기지속 업종 우대
- 18) 체납 관련 업종의 기본권 보호
- 19) 생활업종 등의 배달 서비스료 징구
- 20) 노인 경제 공백을 위한 노장층 특수산업 경제군 개발
- 21) 민간부채 추심업무제도의 개선
- 22) 금산분리 정책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8. 첨단 1차 산업의 육성

- 1) 6대 뿌리산업 지원
- 2) 도시농업과 식량자급 자족
- 3)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업
- 4) 수산 기술의 발전과 해양환경 개선
- 5) 귀농(어)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탈농(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도시권역 구축

9. 교 육

- 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2) 한자 교육진흥법과 한문의 의무교육
- 3) 공교육의 활성화와 비전교육
- 4)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 5) 사학법 개정
- 6) 초·중등학교법의 개정

- 7) 대학의 균형발전
- 8) 교육대학의 입시제도 및 교사 임용고시 재검토
- 9) 교사 안식년제 실시
- 10) 교육기관 정규 및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 추구
- 11) 건강 학교 개설
- 12) 보육제도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
- 13) 아동 및 청소년 심리교사 제도 의무화
- 14)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및 민간시설의 재검토
- 15) 민족 교육 확대 강화**
- 16) 자발적 교육공동체 확산
- 17) 학교별 도시농업 확대 지원

10. 사회복지

- 1) 사회복지 기초제도 개선
- 2) 복지지원의 중복배제와 맞춤형 및 선택 복지제
- 3) 사회교육환경 개선
- 4) 국가 장학금 제도
- 5) 국가 학자금 대출의 미변제 법적조치 금지
- 6) 4대 보험 제도
- 8)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 9) 의료보험 제도
- 10) 요양급여비의 불법운영 개선
- 11)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개선
- 12) 성실한 신용 회복자 들을 위한 조세특례
- 13) 생애주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 14) 의료민영화 전면 재검토
- 15) 초진의 오진예방을 위한 병·의원 진료기록 공유
- 16) 양·한방의 협진진료 체계 구축
- 17) 영·유아·아동의 특별보호법 제정
- 18) 취약아동·청소년 복지 제도 개정
- 19)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복지
- 20) 아동학대 범죄(영·유아 및 아동)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1) 영·유아 전염성 질병 안전을 위한 보호
- 22) 영·유아 보육료의 현실화 및 현행관리제도의 개선
- 23) 재외국민의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급 정책의 전면 재검토
- 24) 영·유아 및 아동과 청소년의 국가 의무 책임제 실시
- 25) 육아 종합돌보미 지원센터 확충
- 26) 여성차별 금지 및 참여확대
- 27) 성 평등 · 사회적 약자 · 소수자들의 격차해소
- 28)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장애인 보호
- 29)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제도

- 30)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
- 31)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법 제정
- 32) 가족 공동체 지원
- 33) 가정 해체의 예방
- 34) 가족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5) 상대적 빈곤 및 사회안전망
- 36) 청년가구주의 지원
- 37) 자아실현을 위한 권리침해 방지
- 3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대책
- 39) 노후보장
- 40) 노장층 경제지원 확대
- 41) 노장층 사회참여 지원센터 확대
- 42) 가교(架橋) 일자리 전문 지원센터 설립
- 43)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 확대
- 44) 주거 기본권 추구
- 45) 주택재개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46) 집단 주거주택의 횡간(橫間)소음 예방
- 47) 임대아파트의 사회적 위화감 문제 해결장치 마련
- 48) 소비 통합 캐쉬백 제도를 통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제도 마련

11. 일자리와 노사관계

- 1) 산업개발 연구지원 확대
- 2)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 3)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
- 4) 흑자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제도적 시스템 마련
- 5) 자율적 노사관계 유지
- 6) 안정적 근로환경
- 7) 근로자의 행복문화 생활 영위 의무화 지원
- 8)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 9) 사무직 시간 초과 근무자를 위한 평가기준의 제도화
- 10) 일자리 확충
- 11) 우수청년 창업자 지원
- 12) 체불 임금의 원천 봉쇄
- 13) 미래형 일자리 창출
- 14) 사회 공공환경산업분야의 자율 참여형 일자리 개발 및 확충
- 15) 창업의 제도개선과 법인세 지원
- 16) 대학 및 청년층의 발명조합 제도화 지원
- 17) 재난안전기금 관리법의 개정
- 18) 대기업 임원의 퇴임 후 하청기업 입사 금지

12. 과학기술

- 1)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대
- 2) 빅 데이터 기술경쟁력 확보
- 3) 미래 성장 동력 연구개발 지원
- 4) 연구개발 사업 통합 정책
- 5) 대학 인재 발굴
- 6) 혁신 경제 과학기술 개발지원
- 7) 과학기술인의 제도권 참여
- 8) 국가 기간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 연구 지원센터 설립
- 9) 원전 폐쇄기술 연구소 설립 및 산업 활성화

13. 문화·예술·체육

- 1) 문화의 세계화
- 2) 문화적 권리 보편화 추구
- 3) 민간 박물관의 확대 지원
- 4) 전통선박의 양성화 및 지원
- 5) 문화적 가치 지방문화재 등록 완화 및 확대 지원

14. 언론·미디어

-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 2) 언론의 윤리성 법적 제도화
- 3) 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제도 마련
-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 5) 대안 언론을 통한 국민참여 기회의 확대
- 6)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제도 마련

15. 환경·에너지

- 1)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 2) 생태계 복원
- 3) 개발과 보존
- 4)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전문 연구소 설립
- 5) 건물 및 주택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평가제도
- 6) 수돗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 7) 녹색·기후에너지 지원

16. 안전한 대한민국

- 1) 재난발생 통합관리 서비스망 구축
- 2) 국가위기관리 환경별 비상 등급제 실시
- 3) 사회 연결 통합 서비스망(종합정보 콜센터)구축
- 4) 국가 재난 망 정보통신 구축 사업

- 5) 공무 및 민원 재해안전 핫라인 개설
- 6) 사기업 안전장비 강제 징구에 따른 국가비상재난안전특별법
- 7)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소방안전 분야 국가부담률 확대
- 8)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등의 첨단 안전용구 전문연구소 설치 및 국가책임강화
- 9)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 공무원들의 안전복 지급 및 관리 의무화
- 10) 학교현장 재난 및 대처
- 11) 해상안전 교육 강화
- 12) 학생 재난안전봉사 단체 운영을 위한 특례법
- 13) 민·관 협력 안전국가 추구

한국국민당

강령/ 정강

<전 문>

한국의 정당구조는 출발에서부터 정당(政黨)의 기본적인 이념보다는 인물중심의 집단적 성향으로 발전, 형성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각 정당의 당원들은 종속적 집단(dependent group)이 가질 수 있는 퇴행성을 보이는 가운데, 당원의 자아이상(自我理想)은 지도자의 당색에 따라 판가름되어져 정당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념과 이념(理念)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며, 편향적인 지도자의 맹종(盲從)과 맹목적인 신뢰로만 귀결되어 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 정당의 현실이다.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정당(政黨)간의 이념적(理念的) 구별은 식별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져 있으며 더 나아가 차별성마저 희석되어 그 구별마저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념(理念)과 정책(政策)의 차별성이 약화된 자리에는 버젓이 감성(感性)의 정치가 그 위력을 가시하며 국민들을 주도하고 있으며, 위정자(爲政者)를 선출(選出)함에 있어서도 정책의 중요성 보다는 후보자들의 이미지를 국민이 선호하는 틀 속에 가두어 하나의 상품의 가치로 격상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당면 과제는 정당이 가져야 할 목표와 설정의 이념(理念)을 분명히 하여 국가의 미래(未來)에 위한 사상(思想)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공생홍익당은 고조선의 후예(後裔)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法統)과 항일정신(抗日精神)을 계승하여 정치적 주체로서 민본(民本)을 채택하고, 정치적 객체(客體)로서 민본(民本)을 추구할 것이며, 민본을 위한 정치(民本政治)를 실현하고자 한다.

민(民)이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천(天)과 민(民)의 일치(一致)를 꾀하고 하늘인 민(民)의 명을 받들어 민(民)이 정치적 대상(對象)으로서 올바르게 존재하게 함으로서 국민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 없고, 또한 정치적 목적 또한 실천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만방에 드러낼 것이다.

안으로는 민(民)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국민(國民)이 국가(國家) 구성의 기반이며 목적이며, 본질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밖으로는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기 위한 분명한 사실이기에 한국국민당은 각고(刻苦)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天命)하는 바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최고 이념(理念)으로서 민족의 정신적 문화 뿌리인 홍익이념(弘益理念)과 민족통합정신(民族統合精神)을 절대적 가치(價値)로 삼아 대한민국의 위상(位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인간윤리 대강령(大綱領)으로써 윤리의식과 사상(思想)적 전통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의 기초적 본질로 승화시켜 그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이다.

건국 이래 민심이 주체(主體)였던 대한민국 정치사상은 우리민족의 위민(爲民) 의식 속에 내재되어 온 민본사상(民本思想)으로서 근원(根源)적 국가 이념으로 중요한 가치적 근간을 이루어 오고 있음은 역사를 통해 반증되었음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한국국민당은 이러한 가치를 되살려 우리민족의 근원(根源)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것이며, 위민(爲民) 의식이 충만한 민본사상(民本思想)의 실천자로서 민(民)을 대변 할 것이다. 그리고 조화(調和)와 평화를 중시하는 세계관이 담겨 있는 **단군주의**의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理念)을 통해 대립이나 정치적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사고(思考)로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개척해 나가고, '천일합일(天人合一)'(하늘과 인간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의 존재로서 우리는 이를 계승시켜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키워나가고자 한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사상과 '세상으로 나아가 도리로 교화 한다'는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인본주의(人本主義), 그리고 현세주의적(現世主義的)인 윤리의식 속에 잠재된 철학사상의 특질을 통합하여 우리 민족의 중요한 가치의식(價値意識)으로 다시 살려내어 「홍익인간」의 이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복지와 정의 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통념의 재인식을 통해 본질적인 삶과 일맥상통하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정립시켜나갈 것이며, 이러한 일에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우리는 민(民)과 함께 동시대를 함께 공유하고 공존(共存)을 추구할 것이다.

세계 여느 사회 여느 국가에서도 보수(保守)와 진보(進步)는 공존한다. 이들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牽制)하며 발전을 이루어 균형이 이루어 질 때 그 사회와 국가는 안정을 누리며 미래를 향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비추어볼 때, 혁신적인 보수(保守)와 합리적인 진보(進步)로서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保守)는 혁신적이지 못하고, 합당한 희생이 없이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형국이며, 진보(進步)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정체성(正體性)을 흔들며 혼탁(混濁)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들은 정당의 입지적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종북(從北)의 세력과 야합(野合)하고, 정당의 이념을 망각하는 형국에 처함도 모자라 이해득실(利害得失)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조합이 되어 정책정당(政策政黨)으로서의 이념과 합리성을 잃고 있음에는 망국으로 치닫는 형국임에야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힘들게 일구어낸 민주화의 열매는 권력만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정치인과 일부 기업인들이 독식하였고, 사회는 점점 배금주의(拜金主義)가 만연하여 이기주의(利己主義)가 팽배해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소통(疏通)의 결여(缺如)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의 부재(不在)가 사회적 일반현상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는 기성(既成) 정당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을 당의 소도구로 해석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한 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만 한다.

이에 **한국국민당**은 반성(反省)과 성찰(省察)을 통해 유구(悠久)한 역사를 다져온 시대적 정신을 통찰(通察)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국민들과 더불어 꿈꿀 수 있는 민본(民本)을 추구하고, 민본(民本)을 위한 정치를 하루빨리 실현하고자 '정의·소통·번영·통일'을 **한국국민당**의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기저(基底)로 삼는다.

첫째, 단군주의의 정의로운 국가

국가는 정의로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을 지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정의로운 국가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을 잘 견지하여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국가로 견인하여야 하며, 국민의 합리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굳건히 함으로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내일을 향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생명존중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시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 국가 스스로 국민을 위하는 정의로움을 갖추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공평하고 소통하는 사회

사회의 통합은 소통(疏通)을 근간(根幹)으로 해야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사회의 각 계층별, 분야별로 소통(疏通)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하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민생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이웃과 사회가 활기차게 소통(疏通)하여 스스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통합(統合)적 소통(疏通)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 사회적 지적운동(知的運動)을 보다 확산시켜 나감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사회를 이끌어 내고, 기업의 잉여가치(剩餘價値) 생산자인 시장 경제주체의 소비자 권리를 추구하고, 보호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내어 공평하고 소통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셋째, 번영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세계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민족적 자존감(自尊心)을 높일 수 있는 위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계승시켜 나감으로써 경제적 번영과 정신적 번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실업 인들에 대한 투자확대와 민·관 협력 차원의 청년창업 및 특허제품 상용화지원, 지적재산권 등의 유지를 위한 창업제도의 제도적 장치와 국가적 차원의 지원 등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든지 창의성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불합리한 상거래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며, 특정한 집단이 수혜(受惠)를 받는 특혜제도(特惠制度)를 과감히 철폐(撤廢)하여 공평한 경제 질서로 전환시킴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력으로 기회의 폭을 확대시켜 나갈 뿐 만 아니라 탈세를 조장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물론 이거니와 소득세로 변질된 생활 기업인들의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혁과 합리적인 조세제도의 적용으로 공정한 조세제도를 확립시켜 나간다.

또한 신경제(新經濟)에 대한 연구투자 확대는 발전적 경제운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건강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

므로 전 세계가 모방할 수도 따라 올 수도 없는 우리 반만년 역사적 가치가 사회문화적 흐름 속에 투영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들을 활성화 하는 계기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문화산업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列強)들과 우호를 돈독히 하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제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고, 남·북간의 공동체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남·북 이산가족들의 '경제자립특구'를 비무장지대에 건설하여 통일의 초석(礎石)을 마련한다.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정보대학' 또는 '국방정보대학' 등의 설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 수립으로 정치적 오류를 최소화 한다.

또한 선진외교를 통해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할 수 있는 주변국들의 즉각적인 협조 체계구축의 가능성을 마련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한 기초와 제도적 장치 또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 후 북한주민을 흡수함에 있어 발생될 경제적, 사상적, 교육적, 환경적 문제들을 해소시킬 단계적 계획들을 위한 헌법 특위(特委) 및 연계된 분야의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한국국민당**은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競走)할 것이며, 내적(內的)인 융성(隆盛)을 도모하여 위대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정 책

1. 영토주권 회복

국가구성의 기본인 영토에 있어 외국의 실효적지배권에 있는 영토라 할지라도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영토임이 분명한 것은 그 경계를 분명하고, 우리 영토와 주권

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명문화시켜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단군사관의 고대사 및 역사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한반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규명한다.

- 1) 헌법 제3조의 개정
- 2) 단군사관의 역사 연구소의 설립

2. 정 치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상호견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권력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로의 권력 분산과 낯은 정치를 지양(止揚)하며, 소통(疏通)과 협력하는 정치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공감의 정치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민본(民本) 정치를 실현한다.

- 1) 단군주의에 의한 충(忠),효,예의 문화 확립
- 2) 소통하는 사회 실현 추구
- 3) 정치 세력의 다양성
- 4) 정책 정당과 상생정치
- 5) 권력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6) 지구당 제도의 부활과 투명성 강화
- 7) 국민소환제(국회의원)
- 8) 선거법 개정을 통한 후보자 거부권 행사의 법적 제도화
- 9) 먹튀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
- 10) 선거보존비용 제도의 개선
- 11) 보궐선거비용의 자부담 추진
- 12) 국회선진화법 개정
- 13) 선출직 당선자의 겸업 제한
- 14) 국회의원 각료직 겸직금지
- 15) 국회의원 세비규정 개정
- 16) 정치권력 견제와 소선거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채택
- 17) 입법부의 부조화 및 부나방 법안 평가제도 도입
- 18) 전시행정 및 선심성 공약 방지를 위한 '국가공인 공약검증센터' 설립
- 1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
- 20) 사법부의 민주화 · 선진화 실현과 경찰조직의 확대 및 전문화
- 21) 경력 법관제도 도입
- 22) 특검 및 특별법 운영에 따른 특별재판소 설치
- 23) 전문법원 확대

- 24) 감사원의 국회소속 이관
- 25) 행정수반의 고유 업무 정진을 위한 제도개선
- 26) 행정고시 제도의 폐지
- 27) 행정부의 구조 및 제도 개혁
 - 여성아동청소년지원청,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경제지원청 등
- 28) 행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혁
- 29) 행정부의 중복 사업 개선과 체질 개선
- 30) 행정부 공무원 자체 생산법령 철폐 및 법안 유권해석의 의회 이관
- 31) 필요성을 입증 못 하는 규제의 철폐
- 32) 국가 공무원법 개정
- 33)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 34) 공직자 불법 범죄행위 조사시 재산동결 특별법 제정
- 35) 국민 특별감사관 제도의 신설·독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 36) 정부 차원의 사회비리 전담 위원회 설치
- 37) 국가기관 비리신고 특별감찰위원회의 법적 제도화
- 38) 민간 사무관제도 확대
- 39) 정부의 예산 및 교부금의 전용 금지
- 40) 부정수령 보조금의 징벌적 규정 강화 및 확대
- 41) 국가 연·기금 전용에 따른 금리 법안 제정
- 42) 지방자치 단체 대규모 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
- 43) 전자서명제도의 국가 책임제 도입에 따른 공인인증제도 개선
- 44) 부조화 사회규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45) 국가의 민간재산 압류 사후조치 제도마련
- 46) 주민증 제도와 연동한 사회기여자의 우선적 배려제도
- 47) 계층 고착화를 탈피하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 확대
- 48) 퇴직공무원 및 공기업 출신들의 사외이사 중복 방지 및 일반인 고문 채용 의무제

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도한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을 지양하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隸屬化)에 따른 무책임을 막으며, 실질적인 지방의 분권(分權)을 통하여 중앙과 지역이 상생과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상생·협력의 분권(分權) 정치 실현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 1)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2)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대학 균형 육성
- 3) 지역축제의 제도 개선

- 4) 전라도와 경상도 폐지
- 5) 정당의 중앙집권적 중앙당 제도의 폐지와 관리위원회 신설

4. 외교 · 안보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기존의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며, 한·미관계에 있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며, 영토주권 확립과 군의 제도적 개선과 국가정보력의 확충을 통하여 군사안보력과 경제안보력을 강화한다.

- 1) 한반도의 비핵화
- 2) 영토주권 확립과 방위역량 실현
- 3)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 4) 균형외교 추진
- 5) 자유무역협정의 제도적 장치
- 6) 재외동포의 권리 신장
- 7) 민주주의 · 반테러 실현
- 8) 국방개혁
- 9) 군영생활의 만족도 실현
- 10) 여성 군 인력의 적절한 활용과 복지를 위한 24시간 군 탁아소 설치
- 11) 병역 면제자의 국방세 의무부과
- 12) 영 · 관급 고급장교의 효과적 사회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13) 군필자 가산점 제도 부활

5. 통일과 동북아 공영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국민합의와 국제사회 협력에 기반 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이거니와 동아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하여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번영된 통일국가를 건설해나간다.

- 1)북방경제 추진
- 2) 민족의 동질성 회복
- 3) 이산가족특별경제구역 추진
- 4)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
- 5) 국군포로 자녀의 자유 귀순민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실시를 위한 특례법 제정

6) 독립 애국인사들의 유해 발굴 사업과 국군포로의 유해 송환 사업 실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

6. 통일사회를 대비한 자유귀순민 특별법 제정

통일은 한민족의 숙원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통일헌법을 만들고, 통일 후 사회·경제 질서를 위해 북한 자유 귀순민들은 동포이면서 각기 다른 정치제도 속에서 삶을 영위한 특수문화권임을 인식하여 기존의 다문화 지원제도와 달리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자유 귀순민이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융화(融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다가올 통일 시대의 북한 주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준비한다.

- 1) 자유 귀순민 차별방지법
- 2) 자유 귀순민들의 행정능력 양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행정 전문대학교 설립
- 3) 자유 귀순민 전용 농공단지 설립

7. 경제 민주화

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체감 여부에 집중하는 경제정책으로 시장과 호흡하며 내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에 대한 종합적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

기업의 이익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경제활동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기업의 한계 이익을 초과하는 잉여가치(剩餘價値)가 적정하게 사회에 환원(還元) 될 수 있도록 공정(公正)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하며, 기업가 정신 쇠퇴(衰退)에 따른 투자 둔화(鈍化)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잉여금의 사내유보 비율을 줄여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과 양극화(兩極化)로 인한 국력의 저하 및 민주주의 붕괴(崩壞)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과세(課稅) 등으로 소득 구조의 재편성을 통하여 현행 소득세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누진(累進) 평가기준의 재정립하여 상위 소득의 증세(增稅) 요소 확대 및 하위 소득의 세금 경감(輕減)요소 확대 등으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고, 시장경제 주체인 국민 모두에게 공정(公正)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초석(礎石)을 만든다.

- 1) 참여경제를 통한 성장경제 구현
- 2) 국가경제브랜드 통합인증센터 설립

- 3) 금융질서의 개편
- 4) 방만한 공기업의 개혁
- 5) 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 6)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 7) 조세 민주주의 실현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조세 불균형 개선
- 8) 기업과 사회의 공평한 조세 원칙 실현
- 9)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의 징세
- 10) 기업 한계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 및 근로자 의무 배당제 실시
- 11) 기업적립금융공사 설립
- 12) 환경부담금(분담금)제도의 개정
- 13) 석유화학 제품의 유가연동제 실시
- 14)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 15) 부가가치세 예납제도의 개선
- 16)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 17) 동일 장기지속 업종 우대
- 18) 체납 관련 업종의 기본권 보호
- 19) 생활업종 등의 배달 서비스료 징구
- 20) 노인경제 공백을 위한 노장층 특수산업 경제 개발
- 21) 민간부채 추심업무제도 개선
- 22) 금산분리 정책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8. 첨단 1차 산업의 육성

농·수·축협이 개혁 및 친환경 농수산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농·수·축협의 개혁하여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농·어촌의 중장기 발전 및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1차 산업을 육성하여 친환경 도시농업과 기르는 수산업을 양성(養成)한다.

- 1) 6대 뿌리산업의 지원
- 2) 도시농업과 식량자급
- 3) 경쟁력 있는 농·축·수산업
- 4) 수산 기술의 발전과 해양환경 개선
- 5) 귀농(어)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탈농(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도시권역 구축

9. 교 육

교육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독자적 능력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으로서 정부는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청소년기의 심리적, 환경적 영향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 및 대물림 기초가 되지 않도록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 1)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2) **한자 교육진흥법과 한문의 의무교육**
- 3) **공교육의 활성화와 비전교육 추구**
- 4)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 5) **사학법 개정**
- 6) **초·중등학교법의 개정**
- 7) **대학의 균형발전**
- 8) **교육대학의 입시제도 및 교사 임용고시 재검토**
- 9) **교사 안식년제 실시**
- 10) **교육기관 정규 및 비정규직의 안정된 삶 추구**
- 11) **건강학교 개설**
- 12) **보육제도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
- 13) **아동 및 청소년 심리교사 제도 의무화**
- 14)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및 민간시설의 재검토**
- 15)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 16) **자발적 교육공동체 확산**
- 17) **학교별 도시농업 확대 지원**

10. 사회복지

복지(福祉)는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헌법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사회정의실현 차원에서 복지는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과용(福祉過用)으로 인한 폐해(弊害)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를 바로 세움으로서 모든 국민이 공평한 복지의 틀 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安全)과 건강(健康)이 강조되는 차세대 복지를 실현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 갖추어져야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보편주의(普遍主義)에 입각(立脚)한 기본 틀 아래 선별주의(選別注意) 복지정책실현과 복지정책을 일체화시키는 통합을 추구하고, 성장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정건전성과 책임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 1) 사회복지 기초제도의 개선
- 2) 복지지원의 중복배제와 맞춤형 및 선택 복지제 실시
- 3) 사회 교육환경 개선
- 4) 국가 장학금 제도의 개선
- 5) 국가 학자금 대출의 미변제 법적조치 금지
- 6) 4대 보험제도
- 7)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 8) 의료보험 제도
- 9) 요양급여비의 불법운영 개선
- 10)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개선
- 11) 성실 신용회복자들을 위한 조세특례
- 12) 생애주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 13) 의료민영화 전면 재검토
- 14) 초진의 오진 예방을 위한 병·의원 진료기록 공유
- 15) 양·한방의 협진진료 체계 구축
- 16) 영·유아 및 아동의 특별보호법 제정
- 17) 취약 아동·청소년 복지 제도 개정
- 18)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복지
- 19) 아동학대 범죄(영·유아 및 아동)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0) 영·유아 전염성 질병 안전을 위한 보호
- 21) 영·유아 보육료의 현실화 및 현행관리제도의 개선>
- 22) 재외국민의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급 정책의 전면 재검토
- 23) 영·유아 및 아동과 청소년의 국가 의무 책임제 실시
- 24) 육아 종합돌보미 지원센터 확충
- 25) 여성차별 금지 및 참여확대
- 26) 성 평등 . 사회적 약자 . 소수자들의 격차해소
- 27)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장애인 보호
- 28)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제도의 개선
- 29)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지원
- 30)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법 제정
- 31) 가족 공동체 지원
- 32) 가정 해체의 예방
- 33) 가족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4) 상대적 빈곤 및 사회안전망의 개선
- 35) 청년가구주의 지원
- 36) 자아실현을 위한 권리침해 방지
- 37)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대책

- 38) 노후보장
- 39) 노상층 경제지원 확대
- 40) 노상층 사회참여 지원센터 확대
- 41) 가교(架橋) 일자리 전문 지원센터 설립
- 42)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 확대
- 43) 주거 기본권 추구
- 44) 주택재개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45) 집단 주거주택의 횡간(橫間)소음 예방 제도 마련
- 46) 임대아파트의 사회적 위화감 문제 해결장치 마련
- 47) 소비 통합 캐쉬백 제도를 통한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제도 마련

11. 일자리와 노사관계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하여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근로기본권의 신장과 아울러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시킴으로서 기업과 근로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터전을 마련하고, 기업의 첨단기기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에 따른 노동인력의 감원 등을 억제하기 지원책과 실직시 보상을 전제로 하는 '책임근로연금제' 를 실시한다.

- 1) 산업개발 연구지원 확대
- 2) 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 3)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 확대
- 4) 흑자 중소기업의 위기관리 제도적 시스템 마련
- 5) 자율적 노사관계 유지
- 6) 안정적 근로환경
- 7) 근로자의 행복문화 생활 영위 의무화 지원
- 8) 비정규직의 근로복지
- 9) 사무직 시간 초과 근무자를 위한 평가기준의 제도화
- 10) 일자리 확충
- 11) 우수청년 창업자 지원
- 12) 체불 임금의 원천 봉쇄
- 13) 미래형 일자리 창출
- 14) 사회 공공환경산업분야의 자율참여형 일자리 개발 및 확충
- 15) 창업의 제도개선과 법인세 지원
- 17) 재난안전기금 관리법의 개정
- 18) 대기업 임원의 퇴임 후 하청기업 입사 금지

12.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창조경제(創造經濟), 혁신경제(革新經濟)를 통한 미래경제의 핵심 기술기반(技術基盤)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기초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전문대학 기술인들의 양성과 아울러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育成)을 통하여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지원 체계의 과감한 개선과 아울러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으로 '기술연구센터'의 확충을 도모한다.

- 1)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대
- 2) 빅데이터 기술경쟁력 확보
- 3) 미래 성장 동력 연구개발 지원
- 4) 연구개발 사업 통합 정책
- 5) 대학 인재 발굴
- 6) 혁신경제과학기술 개발지원
- 7) 과학기술인의 제도권 참여
- 8) 국가 기간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연구지원센터 설립
- 9) 원전 폐쇄기술 연구소 설립 및 산업 활성화

13. 문화 · 예술 · 체육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지향(志向)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시민사회 스스로 추구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사회 각 계층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킴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시켜 나가며,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하기 위해 우선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의 확충(擴充)과 아울러 지역·계층에 따른 접근성의 모색으로 애로와 차별 등 소외(疏外)되지 않는 보편적인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참여환경을 조성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하고,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 1) 문화의 세계화
- 2) 문화적 권리 보편화 추구
- 3) 민간 박물관의 확대 지원
- 4) 전통선박의 양성화 및 지원
- 5) 문화적 가치 지방문화재 등록 완화 및 확대 지원

14. 언론 · 미디어

언론은 독립적으로 존재(存在)해야 하는 사회적 공공재(公共財)로서 국민의 정서적·정신적 환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 및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재벌의 언론 소유를 금지하고, 신문·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구축하기 위해 소유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향(指向)하고, 왜곡(歪曲)된 언론의 폐해(弊害)를 막기 위한 국민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 1) 언론의 자유와 독립
- 2) 언론의 윤리성 법적 제도화
- 3) 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제도 마련
-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 5) 대안 언론을 통한 국민참여 기회의 확대
- 6)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제도 마련

15. 환경 · 에너지

지구생태계 보전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공동 과제(課題)이다.

따라서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親環境)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구환경자원을 최대한 효율적(效率的)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갖춘다.

- 1)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 2) 생태계 복원
- 3) 개발과 보존
- 4)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전문 연구소 설립
- 5) 건물 및 주택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 평가제도 마련
- 6) 수돗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7) 기후 · 녹색에너지 자원

16.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안전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의 통제권 확대를 서둘러 시행하고, 국민들 스스로 자구력(自救力)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재해, 재난, 안전사고, 테러와 위해식품 등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병, 폭력, 범죄, 공해,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 등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

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청'을 두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난(災難)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 1) 재난발생 통합관리 서비스망 구축
- 2) 국가위기관리 환경별 비상 등급제 실시>
- 3) 사회 연결 통합 서비스망(종합정보 콜센터) 구축>
- 4) 국가 재난망 정보통신구축사업>
- 5) 공무 및 민원 재해안전 핫라인 개설
- 6) 사기업 안전장비 강제 징구(徵求)에 따른 국가비상재난안전특별법
- 7)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소방안전 분야 국가부담률 확대
- 8)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등의 첨단 안전용구 전문 연구소 설치 및 국가책임 강화
- 9)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위험직 공무원들의 안전복 지급의 의무화
- 10) 학교현장 재난 및 대처
- 11) 해상안전 교육강화
- 12) 학생 재난안전봉사 단체 운영을 위한 특례법
- 13) 민 · 관 협력 안전국가 추구